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웅식 의원 외 8명(찬성자 : 18명)

나. 의안번호 : 제2619호

다. 발의일자 : 2021. 08. 11.

라. 회부일자 : 2021. 08. 18.

2. 제안이유

가. 지하개발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정화처리가 필요 없는 양질의 수질임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도를 통해 물재생센터로 유입되어 하수처리 부하를 가중시키고 있어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나. 생활용수 등 도시 가용수자원이나 하천용수로의 배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유출지하수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용도로 이용 후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거나,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배출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면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제11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5. 검토의견

■ 개요

-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지하공간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의 경우 정화처리가 필요 없는 양질의 수질임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도를 통해 물재생센터로 유입됨에 따라 하수처리 부하를 가중시킴은 물론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본 개정안은 유출지하수를 생활용수 등의 도시 가용수자원으로 활용하거나 하천용수로 배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지하수법(이하 “법”) 시행령」 제14조의2¹⁾에 따른 용도로 이용 후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거나,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에서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표 1] 개정안 주요골자(안 제34조제1항제11호, 별표2)

현행	개정안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 10. (생략) <신설> 11. 그 밖에 화장실을 개방하는 등 시민이 이용하는 시	제34조(감면) ① ----- -----. 1. ~ 10. <현행과 같음> 11. 유출지하수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용도로 이용 후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거나,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배출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면 12. <현행과 같음>

- 1)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유출지하수의 용도)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생활용수 중 소방용·청소용·조경용·공사용·화장실용·공원용 또는 냉난방용
 2.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현행	개정안
설로서 시장이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	
별표 2.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제23조관련)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 비고 1. (생략) 2.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및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별표 2.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제23조관련) 가. <현행과 같음> ※ 비고 1. <현행과 같음> 2. ----- 업종구분에 ----- -----.
<부칙신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유출지하수 현황 및 비용추계

- 유출지하수는 2020년 기준으로 19.6만톤/일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2011년 16.6만톤/일 대비 18%가 늘어난 것으로 연간 약 2,400만톤이 이용되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고, 이를 하수 처리비용으로 환산 시 약 242억원에 달함.

[표 2] 2020년도 유출지하수 발생원별 현황

(톤/일)

구분	계	지하철	건축물	전력구	통신구
발생량	195,649	122,570	45,820	14,670	12,589
이용량	129,892 (66.39%)	100,541 (82.03%)	6,898 (15.05%)	11,460 (78.12%)	10,993 (87.32%)

-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는 현행 조례 [별표2]에 따라 업종 및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400원/톤을 부과하고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총 4,341개소에 약 82억 27백만원이 부과되었음.

[표 3] 최근 5년간 유출지하수 하수도 사용료 부과 현황

년도	개소수	하수도요금(원)	연간부과량(톤/년)	일부과량(톤/일)
2020	4,341	8,227,398,060	20,692,323	56,691
2019	3,962	6,858,832,880	17,376,341	47,606
2018	3,681	6,036,675,880	17,064,249	46,751
2017	3,354	5,089,972,250	15,604,933	42,753
2016	3,101	4,504,023,860	14,966,637	41,004

- 본 개정안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은 [표 4]에 따른 유출지하수 활용 용도 중 “도로청소”, “조경용수”, “건물용수”, “기타”에 해당하는 약 6,969톤/일²⁾으로 서울시는 파악하고 있음.

[표 4] 2020년도 유출지하수 활용 용도별 현황

(톤/일)

구분	계	하천 유지용수 (공공하수도 미사용)	도로청소	조경용수	수경시설 인공함양 (실개천 등)	건물용수	기타
계	129,893 (100%)	114,419 (88.1%)	215 (0.2%)	1,064 (0.8%)	8,505 (6.5%)	5,602 (4.3%)	88 (0.1%)
지하철	100,541	91,385	98	225	6,889	1,890	54
건축물	6,898	1,728	117	839	468	3,712	34
전력구	11,460	11,460	0	0	0	0	0
통신구	10,994	9,846	0	0	1,148	0	0

- 이는 [표 4]에서 “하천유지용수(공공하수도 미사용)” 및 “수경시설 인공함양(실개천 등)”의 경우 공공하수도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배출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이를 제외하고 산출한 것에 따른 것임.
- 따라서, 본 개정안의 비용추계서(원안 참조)를 참조할 때, 매년 약 5억 9백만원의 세입감소²⁾가 있을 것으로 추계됨.

2) 6,969톤/일 × 400원/톤(하수도요금) × 365일/년 × 50%(감면율) = 509백만원/년

■ 법리적 검토

- 서울시 하수도 사업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조3)와 「지방공기업법」 제5조4)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으로 운영 중인데, 「지방공기업법」 제14조5)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등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보전해주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손실분에 대한 보전이 이루어져야 함.
-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유출지하수는 「하수도법」 제2조제1호6)에 따른 “하수”로서 이를 처리하는 업무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7)에 따른 하수도사업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
- 3)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 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4) 「지방공기업법」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5) 「지방공기업법」 제14조(독립채산)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
 - 1. 경비의 성질상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 2. 지방직영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으로 생기는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6)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 2. - 15. 생략
 - 7)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 1. - 5. 생략
 - 6. 하수도사업

- 동 개정안의 시행으로 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 부하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해야한다”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제1항에 근거하여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본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세입감소분을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다 사료됨.

■ 타당성 검토

- 현재 유출지하수는 법 제9조의2제2항8)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 계획’을 신고토록 규정하는 등의 의무는 있으나 유출지하수 이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함에 있어 서울시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며,
 - 기후변화(2080년까지 2.2℃ 상승, 기상청) 등으로 장기적으로 물부족 상황이 우려(가용수자원량 1/3 수준)되는 가운데 미세먼지, 폭염(약 3배 증가), 열섬 등의 도시기후 문제((그림 1) 참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수자원의 발굴 및 활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겠음.
- 따라서 도시 가용수자원으로 유출지하수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며, 이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 하겠음.

7. - 9 생략
 ② - ③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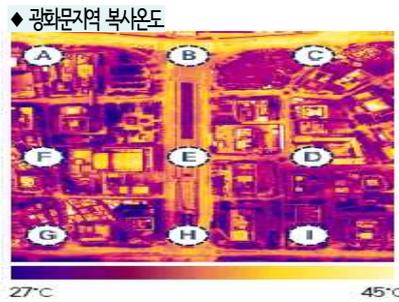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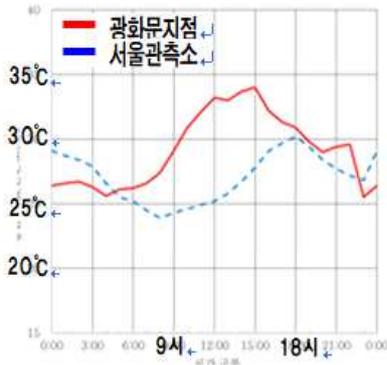
- 8) 「지하수법」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 또는 건축물 등의 준공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빗물관리로 불투수면 증가세 꺾임>



<폭염일 증가 - 시민삶 영향>



<도심열섬 심화 - 광화문지역 열환경('19.8.)>

[그림 1] 서울특별시 도시기후 문제 발생 현황

- 마지막으로, 동 개정안 내용 중 안 제34조제1항제11호의 경우 박기열 의원이 지난 5월 28일 발의하여 2022.1.1.일부터 시행 예정인 동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106호) 같은 조항의 제11호와 상충되기 때문에 이를 [표 5]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음.

[표 5] 현행 조례, 개정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서울특별시조례 제8106호, 2022.1.1. 시행)	개정안 (의안번호 제2619호, 2021.8.11. 발의)	수정안
제34조(감면) ①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 지급여 지원대상자인 경우: 10세제	제34조(감면) ① ----- ----- ----- 1. ~ 10. (현행과 같음)	제34조(감면) ①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